

선화노인재가복지센터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(주야간보호센터)

(이용정원)

센터의 이용정원은 30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·군·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.

(이용대상)

- ① 이용대상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.
- ② 등급되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,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% 이용자에게 받는다.

(이용절차)

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 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.

(이용자 모집방법)

모집방법은 온라인, 오프라인(홍보지, 관계기관 연계 협력, 이용자,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)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.

(급여계약 등)

-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 수급자에게 제공하여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.
 1. 계약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.

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가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-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
- 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-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
 - 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- 4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- 5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(보호자의 권리)

-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-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- 3.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
 - 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 - 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(보호자의 의무)

- 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- 5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잡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이용료 및 입소자의 비용부담료 (2025년 기준)

1)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 - 2025년 1월 1일 기준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2025	2,306,400 원	2,083,400 원	1,485,700 원	1,370,600 원	1,177,000 원	657,400 원

2)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장기요양수가(원) - 2025년 기준

구분	장기요양 1등급	장기요양 2등급	장기요양 3등급	장기요양 4등급	장기요양 5등급	인지지원 등급
3시간미만	32,520 원	30,100 원	27,790 원	26,530 원	25,260 원	25,260 원
3시간이상 ~ 6시간미만	40,650 원	37,630 원	34,740 원	33,160 원	31,580 원	31,580 원
6시간이상 ~ 8시간미만	54,490 원	50,470 원	46,590 원	45,000 원	43,400 원	43,400 원
8시간이상 ~ 10시간미만	67,770 원	62,780 원	57,960 원	56,380 원	54,780 원	54,780 원
10시간이상 ~ 13시간이하	74,660 원	69,160 원	63,900 원	62,290 원	60,710 원	54,780 원
13시간초과	80,060 원	74,170 원	68,520 원	66,930 원	65,350 원	54,780 원

3)비급여수가 -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기관에서 정한다.

비급여종류	내용	산출근거	금액	30일기준
식사재료비	1인 1식	1,000*1	1,000원	30,000원
식사재료비	1인 2식	2,000*2	4,000원	120,000원
프로그램비	무료			
이.미용비	사용내역에 따라			